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안영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9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1.

발의자 : 안영호, 이명녀, 정재환
문희성, 박경흠

1. 개정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‘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’ 의결 및 권고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회의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항 제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94조)

- 중계방송 등 → 녹음·녹화 등

나.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4조의2)

다.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94조의3)

라.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 및 제55조)

- 홈페이지 → 누리집

3.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75조

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2025. 11. 4. ~ 11. 10.(6일간)

나.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4항 중 “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55조제1항 본문 중 “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 한다.

제94조의 제목 “(중계방송 등)”을 “(녹음·녹화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비공개회의”를 “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회의”로 하며, 같은 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중계방송”을 각각 “녹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녹음·녹화·촬영”을 “녹음 등”으로 한다.

제94조의2 및 제9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4조의2(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)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공청회·청문회·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)를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중계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94조의3(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)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94조의2에 따른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·보존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리집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다)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등록기자는 회기 초마다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의 회의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해당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중계방송 등을 허가받은 등록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⑤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·녹화·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.

<신설>

② 녹음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 녹음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녹음 등-----
-----.

제94조의2(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)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공청회·청문회·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)를 누리집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중계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,

<신 설>

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94조의3(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)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94조의2에 따른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·보존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리집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75조(회의의 공개 등)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지방의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□ 국민권익위원회 「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」 중 제도개선 권고 사항(2024.7.22. 의결)

○ 기초의회 회의 실시간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확대(조치기한 2026.12.31.)

1) 비공개대상 회의를 제외한 회의 중계 및 공개

○ 지방의회 홈페이지, 인터넷 플랫폼, 지역방송 등에 비공개 대상 회의(본회의, 상임위, 특별위 등)를 실시간중계하고, 영상회의록 공개

2) 기초의회 회의 중계 및 공개 규정 마련

○ 「회의규칙」 등에 회의 실시간중계 근거 신설 및 중계 대상과 영상회의록 대상 및 공개기한 등을 포함한 운용 규정 마련

<개선안 예시>

현행	개선(안)
<p>「회의규칙」 또는 의사 중계 관련 규정 <u>< 신 설 ></u></p> <p><u>< 신 설 ></u></p>	<p>「회의규칙」 또는 의사 중계 관련 규정 제00조 (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하여야 한다.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공청회·청문회·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포함한다.)를 대상으로 한다. 제00조 (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·보존하여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공청회·청문회·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포함한다.)를 대상으로 한다.</p>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·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 1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 2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 3.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,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
 4.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작성자

- 소 속: 의회사무국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
- 성 명: 권기연
- 연락처: (052)290-4241